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75

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서미화·최민희·권향엽

윤종군 • 김원이 • 이수진

서영석 · 안태준 · 오세희

박정현ㆍ이용선ㆍ김 윤

양문석 · 김영환 · 강준현

김예지 • 전종덕 • 박지원

허성무 의원(19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.

이 같은 장애실태조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음.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, 그 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장애 인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, 보건복

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,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 제목 "(실태조사)"를 "(실태조사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장애실태조사"를 "장애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"로, "내용"을 "내용, 공표방법"으로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실태조사) ① (생 략)	제31조 <u>(실태조사 등)</u> ① (현행과
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제
	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
	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
	예방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
	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
	하여 매년 장애인거주시설 인
	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
	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<u>장애실태조사</u>	<u>③</u> <u>장애실태조사</u>
의 방법, 대상 및 <u>내용</u> 등에 관	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
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	<u>설 인권실태조사</u> <u>내용,</u>
으로 정한다.	<u>공표방법</u> .